



대구대학교와 대구우리들병원의 산학협력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대구우리들병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의료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양 기관은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공동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.

- 가. 공동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
- 나. 학생(대학원생 포함)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
- 다. 대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- 라.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

제3조(진료비 감면) 대구우리들병원은 대구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협의한다.

제4조(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,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협약의 이행)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. 5. 10.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홍 력 른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대구우리들병원

병원장 안용

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-3